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62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6265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40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김승현

변론종결 2024. 5. 22.

판결선고 2024. 7. 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1240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67,534,4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가 2020. 7. 14.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법원 동부지원 2020. 7. 15. 접수 제75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배척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19, 20행의 ‘이용하여’와 ‘사업 추진을’ 사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마지막 행의 ‘통고하였다’와 ‘원고는’ 사이에 ‘피고 B는 위와 같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추진에 계속 이용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2행의 ‘지출하였다’ 다음에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51조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원고와 작성한 매각동의의향서는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 및 처분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 B가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2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9. 9. 3.에 피고 B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한 협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7쪽 제6행 다음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 사실, 해운대세무서에서 단체명 “N”, 대표자 “B”로 기재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당심에 새롭게 추가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16. 6. 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정상화를 위한 관리단 설립을 추진한 점, ② 피고 B는 2016. 6. 16. 정상화추진위원장 및 각층 대표위원 대표로 선임되었고, 2016. 12. 27.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점, ③ 위 관리단은 수영구청에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였던 점, ④ 피고 B가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2016. 12. 27.로부터 2년의 임기가 도과한 후에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⑤ 2년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피고 B에게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 적용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와 매각동의의향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고, 피고 B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2019. 9. 3. 원고에게 한 협약 해지 통보 당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이상균, 판사 고종영

별지